기후위기대응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6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 안호영・양이원영・허 영

노웅래・윤미향・이용빈

김성주 · 임종성 · 강득구

이광재 · 김성환 · 신영대

이원택 • 윤준병 • 이소영

송옥주·신정훈 의원

(179]

제안이유

1994년 발효된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의무를 가지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10월 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 · 단계별 감축목표 설정 ·

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영으로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부문·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 기후행동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 11조까지 및 제15조).
- 마.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

하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목표를 관리하 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취약성・위험을 조사・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
- 사.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0조).

기후위기대응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 (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위기"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매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제3 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흡수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5.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6. "순배출량"이란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제5호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합계를 의미한다.
- 7.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을 합한 제6호의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8. "기후위기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9. "기후위기 대응"이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개 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재정·기술 지

- 원 및 역량배양 활동 등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10. "국외 감축사업"이란 국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나 구매 등을 의미한다.
- 11. "국외 감축실적"이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 12. "탄소예산"이란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는 한 도에서 국가가 특정 기간동안 배출할 수 있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 13.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고 환경적 영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통합 적으로 고려한다.
 - 2.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 3.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국으로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유지하며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 4.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야 하며,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의 영향에 취약한 계층 · 부문 ·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공동편익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 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 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자에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장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 등

- 제7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둔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 위원은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한다.

-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조언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의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의 설정·이행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기후위기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원칙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기후위기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4.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기후위기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9.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시·도 기후위기대응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 단계별 이행대책
 -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에 따른 지자체 보유 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5. 지역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 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 계획 및 관련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에 따라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기후위기대응 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ㆍ군ㆍ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단계별 이행대책
 - 3. 지역별 기후위기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에 따른 지자체 보유 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5. 지역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군·구 계획을 수립한 시·군·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 계획을 변경 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군·구 계획 및 관

- 런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
 - ·도 계획의 이행사항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해 3월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기관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 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 및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사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대상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와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2. 민간연구기관
- 3.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
- 제14조(기후탄력 도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훼손에 대한 종합적·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기후탄력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후탄력 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탄력 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목표
 - 2.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 3. 재원 조달계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

- 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후탄력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기후탄력 도시 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기후탄력 도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 2.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 시행의 지원
- 3.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의 계획수립 등 지원
- 4.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탄력 도시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그 밖에 기후탄력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 기후행동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 기후행 동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 기후행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 기후행동센터의 지정·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후위기대응 국민활동 지원) 정부는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

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이행

- 제1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이행) ① 정부는 2050년까지 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협 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이하 "부문별 감축목표"라한다)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한다.
 - ③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제3항에 따른 탄소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 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
 - 3.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경로

- 4.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5.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 6.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7.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등 관련 기술 전망
- 8.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9. 공청회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 결과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의 설정·관리·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탄소예산이 설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각 부문별 순배출 량이 탄소예산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⑧ 5년간 부문별 순배출량이 제3항의 탄소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차기 탄소예산을 설정할 때 초과 배출한 배출량을 공제하고 설정한다.
- ⑨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의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 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부문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평가지표 및 목표치
- 2. 제1호의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
- 3. 제1호의 평가지표에 따른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준수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20조(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목표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계획기간 시작 이전 6개월 전에 고시하고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이 조에서 "목표"라 한다)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목표 설정에 대하여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이력, 관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 항에서 "예비 관리업체"라 한다)에게 계획기간 시작 1개년 이전의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업체 및 예비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온실가스 배출 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토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정하고 그 기간 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진단,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자료 및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관리업체별 목표의 설정, 명세서의 작성,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된 관리업체별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명세서의 공개 범위·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 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

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배출량 및 지역별 배출량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 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 수하여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의 탄소예산 수립·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포함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외 감축사업의 수행) ① 외국 정부와 온실가스 국외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정에따라 이미 국외 감축실적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수행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 3. 외국정부와의 국외 감축실적 배분비율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요건 준수 여부
- 2.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적절성
- 3.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 4.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5.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 6.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신청한 자에게 등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에 부적합하 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사업수행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

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의 승인·등록·모니터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국외 감축실적의 등록 및 이전) ① 국외 감축사업을 통하여 국 외 감축실적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축량 증명서
 - 2. 국외 감축실적 발생국의 증명서
 - ② 환경부장관은 신고받은 국외 감축실적을 국외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외감축 사업자는 등록된 국외 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감축 사업자가 등록된 국외 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환경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국외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외 감축실적의 등록 및 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외 감축사업 공동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외 감축사업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환경부장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 2. 온실가스 국외 감축사업의 등록
 - 3. 국외 감축실적의 이전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국외 감축실적 이전에 대하 여 권한 있는 자가 공동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제26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 후위기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상정 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취약성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7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적응대책 이행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기후위기 리스크와 취약성
 - 2. 기후위기에 따른 연간 피해 발생 현황
 - 3.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 4.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공공기 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적응대책 이행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공공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취약기관 및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 27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후위기 국제협력

- 제31조(기후위기 국제협력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 립과 연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위 기 국제협력 기본계획(이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 2. 기후위기 국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 3. 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후재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 6. 개도국의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역량배양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협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후위기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국제협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는 종 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종합정보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 관련 재원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기후위기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3. 기후위기 관련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업무를 대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3. 민간연구기관
- ④ 그 밖에 협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및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갱신하여 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 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 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 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고서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그 밖에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 아위탁할 수 있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 5. 지방자치단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35조(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 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20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0조, 제42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 조, 제63조 및 제64조를 삭제한다.